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고 포기방침 (2014누6300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등 처분(2014. 1. 6)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결과에 대해 소송대리인(변호사)와 상고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상고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고포기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300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등처분취소
-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
 - 피고(항소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판결결과 : 1심 원고일부승/피고일부패, 2심
- 판결진행사항
 - 2014. 1. 23. : 행정소송 제기
 - 2014. 8. 29. : 1심 판결선고(원고승/피고패)
 - 2014. 9. 19. : 항소
 - 2015. 5. 13. : 항소 판결선고(원고일부승/피고 일부패)

나. 행정소송 소송제기

- 사유 : 2013. 9. 13. [충현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계약체결 포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과 입찰보증금 (19,857,000원) 귀속처분함에 대해 2014. 1. 23. 행정소송을 제기
- 판 결 : 우리구 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 처분과 금 19,857,000원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 항소결과 및 상고포기

- 항소 : 원고의 계약포기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소송진행동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기간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은 없으며,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각하되어야한다는 이유로 항소함
- 판 결
 - 제1심판결 중 입찰보증금 취소처분의 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사건 소 중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요요지**

-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임으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므로 원심의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각하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소의 이익이 있으며, 설계서의 오류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에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

라. 상고 포기사유

○ 항소결과 입찰보증금 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우리구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되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으며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상 피고측에서 주장하거나 추가 입증할 내용 및 증거자료가 없음.

- 붙임 1. 판결정본 1부
 2. 패소원인 분석표 1부
 3. 소송대리인 상고포기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소영** 계약팀장 **나승임** 재무과장 **정상희** 경제재정국장 05/19 **김종두**

협조자

시행 재무과-10183 () 접수 ()
 우 120-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연희로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135 /전송 / / 대시민공개